

의안번호	2207667
의 퇴 인	김선민의원
회 답 일	2025. 3. 10.
추 계 번호	25C04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필수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400만원(연평균 1,28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안 제83조의5 신설)	1,280	1,280	1,280	1,280	1,280	6,400	1,2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신설	국가필수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이하 “국가필수의약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인 제조, 수입, 유통 등을 위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둠(제1항)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회 이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분과협의회에서 소요될 수 있는 경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과 같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안 제83조의5 신설)
 - (현행) 협의회 구성 현황
 - － (의장) 식약처 차장
 - － (위원) 10개 부처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 * 교육부, 국방부, 보건부, 복지부, 고용부, 국조실, 식약처, 원안위, 질병청
 - 개정안에 따라 협의회 위원 규모가 30명으로 확대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16명 위촉하는 것으

로 하고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1인에 대한 참석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20만원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수당: 16명 × 20만원 × 4회 = 1,280만원(연간)

□ 추계결과, 협의회 위원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위원 수당 지급으로 매년 1,28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안 제83조의5 신설)	1,280	1,280	1,280	1,280	1,280	6,4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1)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5만원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2시간 이상 회의로 보고 20만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